

書面答辯書

○金恩京委員

(質疑要旨)

향후 건설계획인 중량자원회수시설 건설용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

(答 辯)

1. 향후 건설계획인 중량자원회수시설 건설용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

○ 중량자원회수시설의 시설규모 750톤/일은 기본계획용역중인 중량자원회수건설사업 기본계획보고서 초안 제3장 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조사(표 3.2.2-5)의 장래 소각설비 용량 산정에서 소각설비 용량을 746톤/일로 산정하였으나(별첨1)

○ '99년 조사된 98년 3개 구 쓰레기발생량 및 향후 발생량 예측을 근거로 소각용량을 재산정하여 본 결과, 3개 구 총 발생량이 1,458톤/일 중 소각대상량이 508톤/일로 예측되어 안전율(1.1)을 고려하여 560톤/일로 조정 검토중이며, 자치구로부터 쓰레기발생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어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재검토할 계획임.
- '98년도 쓰레기 발생량에 의한 소각용량 예측

(단위 톤/일)

구 분	총쓰레기 발생량	가연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소각대상량(40%)	소 각 대상량	소각용량
계	1,458	770	436	174	508	508×1.1=559
중 량 구	346	234	128	51	157	
동대문구	573	268	121	48	195	
성 북 구	539	268	187	75	156	

※ 소각대상량산정 : 가연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중 소각대상량

중량자원회수건설사업 기본계획보고서

< 표 3.2.2-5 > 장래 소각설비용량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2008	비 고	
장래인구 (천인)	중 량 구	475	474	474	473	473	475	480	487	A
	동대문구	388	385	381	378	375	374	374	373	
	성 북 구	479	498	517	536	555	555	555	555	
단 위 배출량 (kg/인·일)	중 량 구	0.95	0.89	0.88	0.88	0.90	0.91	0.91	0.91	B
	동대문구	1.58	1.40	1.37	1.37	1.41	1.43	1.45	1.44	
	성 북 구	1.31	1.16	1.15	1.14	1.17	1.19	1.20	1.19	
재활용률 (%)	중 량 구	37.64	40.5	42.0	43.0	43.5	44.0	45.0	46.0	C
	동대문구	37.30	40.5	42.0	43.0	43.5	44.0	45.0	46.0	
	성 북 구	46.74	48.5	49.0	49.5	50.5	50.9	51.70	52.0	
음식물 쓰레기량 (톤/일)	중 량 구	140	119	112	107.8	103.6	98.0	88.2	84	D
	동대문구	95	80.75	76	73.15	70.30	66.5	59.85	57.0	
	성 북 구	189	170.1	160.65	148.84	137.03	118.13	119.07	94.5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2008	비 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량 (톤/일)	중 량 구	8.4	19.04	32.48	44.20	55.94	68.60	67.91	67.20	E
	동대문구	5.70	12.92	22.04	29.99	37.96	46.55	46.80	45.60	
	성 북 구	11.34	25.70	43.85	59.67	75.52	92.61	91.68	90.72	
총발생량 대비 자원화율(%)	중 량 구	1.87	4.51	7.79	10.61	13.14	15.86	15.39	15.16	F=E/A · B
	동대문구	0.93	2.40	4.22	5.79	7.19	8.69	8.50	8.49	
	성 북 구	1.80	4.45	7.38	9.77	11.63	14.02	8.0	13.74	
연탄재율 (%)	중 량 구	0.45	0.43	0.38	0.34	0.28	0.23	0.16	0.11	G
	동대문구	1.95	1.86	1.72	1.54	1.32	1.21	1.01	0.87	
	성 북 구	3.18	3.02	2.89	2.77	2.67	2.57	2.38	2.06	
소각대상물 (%)	중 량 구	60.04	54.56	49.83	46.06	43.08	39.90	39.45	38.72	H=100-(C +F+G)
	동대문구	59.82	55.24	52.06	49.66	47.99	46.09	45.48	44.64	
	성 북 구	48.28	44.03	40.73	37.96	35.20	32.51	32.15	32.20	
소각대상량 (톤/일)	중 량 구	269	230	207	191	183	172	174	171	I=H×A×B
	동대문구	367	297	271	257	253	246	246	239	
	성 북 구	303	254	242	231	228	214	214	212	
	세 개 구	939	781	720	679	664	632	632	622	
최대 월 변동계수	세 개 구	1,085								K
가동률	세 개 구	0.904								L
소각설비 용량 (톤/일)	세 개 구	1,126	937	864	814	796	758	760	746	M=J×K/L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 또는 원가계산 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위탁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 등에 의거 무상 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